

□ 진정 제30호 이재호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4년 5월 6일생, 노동자(협신사)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호는 1989년 협신사 내에서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10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재건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던 중, 같은 해 10월 28일 주안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회사 생산부장과 전화통화 후 말없이 술집을 나간 뒤, 같은 달 29일 00:40경 주안4동 소재 집 근처 주차장 앞에서 둔기에 턱을 맞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앞 노상에서 과한으로부터 보도블록으로 턱을 폭행당하여 사망하였고, 범인은 검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다. 인천동부경찰서가 사건기록, 수사자료 등을 분실하여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보고자료만 입수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년 2월 27일 협신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정되자 사장은 갖가지 유형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였다. 이러한 노조 탄압으로 노조위원장 등 핵심 노조간부가 강제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였고, 얼마 안되어 노동조합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재호는 노동조합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노조 와 해후에는 등불회, 한백회 등 노동조합 재건을 위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노조 재건을 위하여 '내일을 위한 집'에 주 1~2회 방문하여 교육과 상담을 받았다.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초동수사과정에서 이재호의 피묻은 잠바를 세탁하고, 회사측에 대하여 미온적인 수사를 폈으며, 시신의 화장을 유도하는 등 유가족과 대책위 사람들에게 의혹을 살 만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내일을 위한 집'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나 진전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장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재호의 부친이 이재호 사건에 대한 충격과 상심으로 인하여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진정 제31호 고정희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년 12월 14일생, 학생(연세대 정외과)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3월경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항의투서 건으로 서초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경찰에 의해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되어 가료 중, 같은 해 5월 13일 병원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초경찰서는 고정희가 1988년 5월 13일 17:40경 병원 9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2층 복도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변사사건 수사자료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1월~2월경 고정희는 관계기관이 자신에 대한 감시와 조종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관할경찰서는 고정희를 연행하여 조사 하고 가족을 불러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였다. 고정희는 적당한 병실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담당경찰관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입원을 독촉하여 같은 달 26일 ○○병원 병동에 입원하여 5월 13일 사망 직전까지 입원하여 있었다. 입원 중이던 고정희는 1988년 5월 13일 17시40분 경 저녁식사 도중, 갑자기 병실문을 뛰쳐나갔으며, 비상계단을 통해 9층으로 내려간 후창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각
향후 과제	

□ 진정 제32호 허원근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5월 15일생, 군인(일병),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 휴학
사건 개요	◦ 1984년 4월 2일 13:20경 육군 ○○사단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사고 지역은 GOP 철책 근무지다.
과거 수사결과	◦ 육군 ○○사단 헌병대는 허원근이 소속대 중대장 김○○의 이상성격에 의한 학대를 비판, 중대장이 보급계 상병 이진영을 대동하여 철책 근무 순찰을 나가자 15발들이 탄창 2개를 절취하여 자신의 M16을 휴대하고 폐유류고 뒤로 가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1984년 4월 2일 02:00~04:00경 중대장 김○○ 등 중대 간부들이 중대장실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선임하사 노○○이 행정반으로 뛰쳐나와 난동을 부렸다. 노○○이 실탄이 장전되어 있던 M16소총 개머리판으로 허원근을 내려찍자 허원근이 팔을 들어 막았고, 노○○이 다시 총 쏘는 자세를 잡는 순간 총이 발사되어 허원근이 오른쪽 가슴을 관통했다. ◦ 김○○은 대대 상황실로 허원근이 자살했다고 허위 보고하였고(04:00~06:00 추정), 대대장 전○○은 보안주재관 허○○과 함께 아침(06:00~07:00 추정)에 중대본부를 다녀갔으며, 허○○은 이후 중대장의 사건 수습을 도왔다. ◦ 중대장 김○○은 이례적으로 철책순찰에 나섰고, 중대본부 요원 일부는 행정반에서 피를 닦기 위한 물청소를 했고, 10:00~11:00경 누군가가 중대본부 밖에서 허원근에게 다시 실탄 두 발을 발사하였다. 허원근은 우측 두부의 총상에 의해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은 인정)
향후 과제	◦ 18년만에 '타살'되었음을 밝혔으나, 두 발 더 발사한 경위와 사건이 자살로 조작된 과정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군단헌병대, 육군범죄수사단 등의 재조사 결과 자살 결론이 내려진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 군내 의문사 방지를 위해 군수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은폐된 타살의 경우 청구권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 진정 제33호 문영수 사건

인적 사항	◦ 1953년 11월 10일생, 실직(진아교통 버스 운전기사)
사건 개요	◦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경 행방불명되었다. 1982년 8월 22일경 행려환자로 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사체는 전남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되었다(유족은 1987년 전남도경의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
과거 수사결과	◦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 21:30경 광주시 소재 여인숙에서 상해사건으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다음 날 오전에 서부경찰서로 연계되어 형사계 소속 최○○에게 조사를 받았다. ◦ 조사를 받던 중 이유 불명으로 혼수상태가 되자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2일 18:05경 사망하였다. ◦ 최○○은 문영수의 주소 등을 알고 있었으나 발병경위 및 사망경위를 은폐하고자 사체를 행려병자로 처리하고 전남대 의대 영안실에 인계하여 사체해부용 교재로 사용되게 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문영수는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며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깨 김○○의 목을 1회 찔렀다. 여인숙 주인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과 방범대원이 출동하여 21:40경 문영수를 연행하였다. ◦ 문영수가 파출소 및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으나, 당시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관련 경찰관들이 일관되게 문영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중요 참고인 최○○이 미국에 거주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문영수가 타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계 라○○, 최○○, 문○○는 형사피의자인 문영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영수를 행려환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적십자병원에 입원조치시켰다. ◦ 서부경찰서 위 경찰관들의 문영수 사체유기에 고의가 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미국에 있는 중요 참고인 최○○을 조사하여 타살 여부나 문영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진정 제34호 오범근 사건

인적 사항	◦ 1951년 11월 15일생, 후지카대원전기(주) 구로공장 경비원
사건 개요	◦ 1988년 3월 9일 21:30경 구사대에 의해 후지카대원전기 노동자의 파업농성이 해산된 후, 다음 날 아침에 동료 수위들에게 구사대 폭력의 부당함을 토로하던 중 사장회의실에 올라간 뒤 음독하여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충무병원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0:20경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구로경찰서와 서울남부지청은 오범근이 청산가리를 먹고 사장회의실에 들어가 회사 전무와 면담을 요청하다 쓰러져 사망하였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 삶을 비판해 오다 음독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오범근은 본인이 산업재해 당한 후 산업재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 오범근은 1988년 3월 7일 발생한 후지카대원전기(주) 노동쟁의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였고, 3월 9일 21:30경 발생한 잔인한 구사대 폭력에 격분, 사장회의실에서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항거의 표시로 음독 사망하였다. ◦ 관할 구로경찰서는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를 바로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성노동자를 폭행하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농성 노동자만을 연행·구속하였다. 오범근 자살 후 구사대 중 4명이 기소되었으나, 구사대 투입을 계획한 이○○ 생산차장 등 회사측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 오범근은 파업 농성에 대한 구사대의 폭력 진압행위를 경찰이 인지하고도 방관하는 것에 분노한 것이 자살을 결심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오범근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 당시 오범근 변사사건 처리과정에 안기부, 경찰 정보과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므로 국정원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정 제35호 배중손 사건

인적 사항	◦ 1955년 8월 30일생, 노동자(금성사)
사건 개요	◦ 1988년 11월 14일 회사에 출근하여 자재창고에서 일을 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경 사내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을 수사종결하였다. 수사자료는 없다.
위원회 조사결과	◦ 취하
결정 및 후속조치	
향후 과제	

□ 진정 제36호 김용갑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1월 29일생, 속초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사건 개요	◦ 김용갑은 1990년 3월 27일 15: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동료 학생들과 술자리를 하고 헤어진 후 집에 귀가하지 않은 채 속초시 도로공사연수원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1990년 3월 29일 문○○이 자신의 승용차로 김용갑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고 자수하였고, 속초경찰서는 4월 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문○○은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실치사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위원회 조사결과	◦ 김용갑은 일부 학생들로부터 총학생회장 사퇴 압력을 받고, 폭행과 협박을 여러 차례 당하여 사고 며칠 전부터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 학교측은 운동권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 중 일부에게 향토장학금을 지급하여 독려하였다. ◦ 김용갑이 1990년 3월 28일 00:30경 남자 둘과 사고현장 쪽으로 걸어간 후 사망 시간인 02시까지 행적을 알 수 없다. ◦ 사체가 도로 옆에 반듯하게 놓여 있던 상황, 구두와 사체가 떨어져 있는 점 등 김용갑 사고정황은 우연한 사고라 하기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피의자 문○○이 2000년에 사망하였고, 변사사건 기록 역시 폐기되어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동우대학이 학생지도계획과 장학금 지급자 명단, 그리고 당시 교직원 명단 등을 보내지 않아 학내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 문○○의 주변 인물, 속초 폭력조직과 학교측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학생운동 세력을 억압하려는 동우전문대 학원 폭력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측과 폭력학생들의 관계, 그리고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요구된다.

□ 진정 제37호 박종근 사건

인적 사항	◦ 1963년 12월 6일생, 군인(방위병), 동국대 한의학과 졸업
사건 개요	◦ 한의대를 졸업한 뒤 육군 ○○사단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8월 1일 아침경 출근한 뒤 창고에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사단 헌병대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비관한 박종근이 헌병과견대장의 보약 요구 사실을 주위에 발설하여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분신자살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1988년 8월 1일 경주시 중앙동사무소 숙직자 배○○은 08:15경 '평'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쪽에서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곧 창고로 달려가 화염과 연기로 자욱한 창고안에서 박종근이 창고 안쪽 1~2미터 떨어진 지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예비군 중대장 이○○와 헌병대 경주과견대장 권○○이 박종근에게 보약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박종근은 이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 박종근이 누워있던 곳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의 탁자 위에 등산용 버너가 있었던 점, 사고 당시 방위병들이 창고에 있는 등산용 버너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여먹었던 점을 종합하면, 박종근이 위 등산용 버너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박종근이 자살하였는지 사고에 의한 화재로 사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박종근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 박종근의 죽음은 군 간부들의 부당행위와 관계 있으므로 박종근을 군복무중 직무 관련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야 한다.

□ 진정 제38호 우인수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5월 22일생, 군인(일병),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휴학
사건 개요	◦ 우인수는 육군 ○○사단 포병연대에서 근무 중 1988년 6월 유격훈련에 참가하였다가 6월 20일 17:00경부터 유격장내 비포장 도로 약 4km 구간을 비무장 구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단의무대, 벽제(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4일 07:55경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1사단 헌병대는 우인수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1988년 6월 20일 17:00경에 실시된 유격훈련 구보 도중 목적지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우인수는 대열에서 힘들어하며 뒤로 처졌으나, 병장 김○○ 등 동료병사들이 부축하여 계속 뛰었고, 우인수가 부축을 받으면서도 비틀거리며 제대로 뛰지 못하자 상병 이○○가 우인수를 업고 잠시 뛰기도 했다. 이 때 우인수는 의식을 잃었으며, 부대간부인 중사 염○○ 등에 의해 대열에서 열외되어 길 옆에 눕혀진 뒤 후송되어 혼수상태로 있다가 4일 후에 사망하였다. ◦ 우인수가 사망에 이른 것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대대장 중령 김○○이 유격훈련을 원칙대로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된 때문이었다. 우인수가 매우 지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보를 계속한 것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위원회에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비교적 쉽게 사인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의문사로 남게 된 데는 군 당국이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과정 공개와 목격자 면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마무리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 진정 제39호 이윤성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6월 23일생, 군인, (성균관대 재학 중 강제징집)
사건 개요	◦ 이윤성은 육군 ○○사단서 근무 중 의가사 전역 8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1983년 5월 4일 부대내 테니스장 심판대에 군화끈과 요대를 연결하여 목을 맨 채로 매달려 있는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사단 헌병대는 이윤성이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1983년 5월 4일 03:00~04:00 사이에 불온뼈라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고심하다가 자살을 결심, 경계병의 눈을 피해 침실을 이탈, 정구장 심판대에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이윤성은 19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고, 6일 현역입영 대상이 아님에도 강제징집되었다. 이윤성은 보안사령부의 A급 관찰대상자로 ○○보안부대에 의해 수시로 동향 보고되었으며, 2~3회 이상 보안사령부에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사단 헌병대 수사에서는 ○○보안부대가 불온뼈라 소지혐의로 연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보안부대는 '녹화사업'을 위해 의가사 제대를 앞둔 이윤성을 연행하였다. 이윤성은 ○○보안부대에서 1983년 4월 30일경부터 사망 전날인 5월 3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 육군 ○○사단 헌병대는 이윤성의 사체발견 시각을 06:10라고 했으나, 조사 결과 03:00~04:00경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이윤성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의 심의 요청)
향후 과제	◦ 이윤성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는지 여부, ○○보안부대의 조사 내용, 사건 이후 보안사령부의 감찰조사 내용 등을 기무사령부의 비협조로 인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 ◦ ○○보안부대의 사건 은폐 조작 여부, 헌병대 수사가 지연된 요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강제징집·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진정 제40호 박필호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11월 15일생, 군인(이병), 부산대학교 의예과 휴학
사건 개요	◦ 1987년 3월 19일 육군 ○○사단 의무근무대 화장실 천정의 보에 판초우의의 끈에 목이 매달린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제26사단 헌병대에는 박필호가 입대 전 의과대학을 다녔지만 군의관이 아닌 병사로 입대한 사실에 대한 주위의 놀림과 대학교 낙방문제(서울대 전자공학과 2회 낙방)를 비판하여 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필호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지원하였으나 2회에 걸쳐 낙방하였고, 다니던 부산대 의예과를 휴학한 후 1987년 1월 30일 군에 입대해 논산훈련소를 거쳐 동년 3월 13일 육군 ○○사단 의무근무대로 전입되었다. ◦ 전입 후 전입신병훈련을 받던 중 3월 19일 04:00 ~ 06:00경 내무반을 이탈, 화장실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 당시 의무대 내무반은 군기가 상당히 엄격하였다. ◦ 법의학 감정결과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필호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 진학 문제로 인한 좌절감과 군 생활의 엄격한 통제와 훈련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주변사관 김○○은 아침점호 시간에 박필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필호가 기상 5분전에 화장실에 간다고 보고하고 나갔으며, 점호시간에 박필호가 없어 찾으러 다니던 중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박필호의 후견인이 없었음에도 사건 이후 후견인을 지정하여 정상적으로 부대 내의 후견인제도가 운영되는 것처럼 조작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엄격한 군기에 의한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한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경우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부대운영에 관한 조작사실을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사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참조되어야 하며, 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는 문책할 필요가 있다.

□ 진정 제41호 정연관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12월 26일생, 군인(상병)
사건 개요	◦ 1987년 12월 4일 육군 군수지원사령부 내무반에서 취침시간(22:20경)에 병장 백○○은 반원들을 침상에 일렬횡대로 세워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구타하였다. 이에 정연관이 맞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자 인공호흡 등의 구호조치를 하다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헌병대 군수지원사령부 파견대는 백○○이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하급자들을 침상 위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구타하던 중 정연관이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정연관의 사망이 1987년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국방부는 부인하였다. 백○○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군 부재자투표는 중대정이 여당지지 교육을 하고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등 부정이 공공연 하였다. 백○○은 옆 내무반 고참들이 부재자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반원들을 질책하자, 자신이 나서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구타하였다. ◦ 헌병대는 정연관의 사망은 단순 구타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담당 보안부대는 언론보도 후 보안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백○○ 등을 조사하여 정연관의 사망이 군 부재자투표와 관련(여당지지 교육 등)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 정연관의 부모가 거쳐하는 포항지역 보안부대에서는 보안사령부의 지시로 정연관의 사망이 부재자투표와 관련이 없다고 유족을 회유, 설득하였으며, 정연관의 집을 감시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위법한 공권력의 간접적 개입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 군부대 내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진정 제42호 남현진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 2월 22일생, 군인(이병), 한국외국어대학교 2년 휴학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 11월 19일 논산훈련소 입소 후 다음 해 1월 25일 소속 부대에 배치받았고, 2월 3일 경기도 소재 소속대 쓰레기장 부근 철조망 울타리 밖의 인근 야산에서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 ○○사단 헌병대는 2월 25일 남현진이 주특기 변경에 대한 실망감과 향후 업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복무 부적응을 비판하고 자살할 것을 결심, 부대에서 약 1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현진은 한국외국어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후에는 입대 전까지 건축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1990년 11월 19일 논산훈련소에 군 입대 후 정보직군을 받았으나 신원조회에서 탈락하여 전방 소총수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며, 자대 배치 후 남현진의 학생운동 전력을 알고 있던 중대장 등 지휘관으로부터 관찰을 받았다. 헌병대는 1991년 2월 3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하루 전날인 2월 2일 GOP 친숙훈련 복귀 당일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당시 일지가 폐기되어 현재 확인할 수 없고, 목매는데 사용된 줄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 헌병대는 자살을 예단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현진의 사망일 변경 의혹, 목 매는데 사용한 끈의 출처 및 조작 경위, 헌병대의 끈 조작 의혹 등 헌병대 수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사체의 여러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며, 헌병대 '헌병 속보' 중 사망인지 경위에 대한 조작 여부도 밝혀야 한다.

□ 진정 제43호 박상구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7년 7월 6일생, 군인(하사)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년 12월 13일 군에 지원 입대하여 하사관 임용을 받은 후 1986년 5월 31일 육군 탄약사령부에 전입한 이래 탄약취급 반장직에 근무하였고, 1987년 4월 15일부터 양묘장 관리 하사직으로 근무하던 중 1987년 5월 10일 영선반 창고에서 응급 상태로 발견되었고, 민간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 5월 10일 외박 나가서 20분 늦게 부대에 복귀했다고 부대 일직사관으로부터 질책을 듣자, 평소에 가정생계 곤란 및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삶을 비판하였으며, 당일 들은 꾸중을 계기로 급한 성격에 농기구 함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상구는 외박 나갔다가 1987년 5월 10일 21:00경 부대에 복귀한 뒤 일직사관 중사 이○○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한 뒤 영선반 창고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20:00~22:00 무기고 초소 근무자들은 근무 도중 영선반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가 박상구를 업고 본부 의무실로 옮겼다. 헌병대 수사에서 영선반 창고로 박상구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병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발견자들의 진술로는 박상구가 농약을 마셔 냄새가 났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의무병도 확인할 수 없었다. 박상구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실제 응급실 도착시간, 박상구의 상태, 치료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실제 농약 음독 때문에 응급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나 정확한 사망시각 및 사망장소도 분명치 않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각(사인은 불명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없다)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를 맡은 육군 ○○사단 헌병대는 현장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았으며, 유서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들의 조사를 누락시켰으며, 사체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유족의 진술조서 등도 경황이 없는 유족을 기망하여 작성하였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근본적으로 군수사당국을 불신하게 되었다. 칼라 사진 원본이 없어 사체 상태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다.

□ 진정 제44호 노철승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5년 3월 5일생, 군인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철승은 1987년 3월 1일 수도경비사령부 관할 초소에서 경비 근무 교대를 마치고, 순찰로를 따라 소대막사로 복귀하던 중 K2 소총 탄환 2발에 의한 총상을 입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병대는 노철승이 가족문제와 대학을 못 간 열등감으로 고민하다가 근무 교대 후 동료 근무자 3인과 복귀하던 중 순찰로에서 1~2미터 벗어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총기의 개머리판을 양발 사이에 끼우고, 총구를 이마 정중앙에 밀착하고 실탄 2발을 발사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철승은 사망 2주전 1987년 2월 13일 10여개월의 병원후송생활을 마치고 자대복귀하였으나, 곧바로 태권도 승단심사에 대비한 허벅지 등에 피멍이 생길정도의 가혹한 교육을 받았다. 1987년 3월 1일 아침 초소 경계근무 도중, 태권도 교육을 받기 위해 즉시 철수하라는 소대상황실의 지시를 받고, 실탄을 소지한 채 소대막사에 돌아오다가 자살했다. 중대장 이○○는 특정지역(청와대) 초소 경계근무 중 근무수칙을 어긴 사실에 문책이 내려질 것을 우려, 3소대장과 소대원들에게 사고경위를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사고지역은 청와대 외곽경비지역으로 헌병대는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려면 부대측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헌병대는 선임병 정태영의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망경위와 최초 목격자를 사실과 다르게 결론지었다. 또한 검증조서도 헌병대 운전병 등의 무인을 찍어 서류를 조작했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각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철승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해야 한다. 군 수사과정에서 자살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해 서둘러 결론짓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구타와 가혹행위자 및 은폐조작 지시자를 엄정 처벌하여 은폐조작을 근절하여야 한다.

□ 진정 제45호 이승삼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8년 1월 5일생, 군인(이병), 부산공업전문대학 휴학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 3월 3일 17:00 이전 육군 ○○사단 중대장실 내에서 탄환이 목 부분으로 사입되어 정수리 사출한 관통상을 입은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헌병대는 이승삼이 지병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아침 구보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 올라 대열에서 낙오하는 등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복무염증을 느낀 나머지 신병을 비판하다가 총기를 이용하여 자살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승삼은 고참병들의 심한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이를 간부에 보고하여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고참병들의 따돌림과 폭행이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삼이 근무하는 부대는 군기강이 문란한 상태로 중대장이 상부 보고도 없이 영외 출타를 일삼았고, 고참병들은 수시로 근무편성표를 바꾸어 하급자를 '말뚝 근무'를 서게 하였다. 사고 당일 이승삼도 4시간 동안 대공초소 근무를 서야 했다. 대공초소 근무 중에도 고참 최○○에게 구타를 당했던 이승삼은, 16:20경 근무 교대 후 중대 행정반에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고 중대장실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타살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 ○○사단 헌병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담뱃재의 타액 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이승삼 눈 주위의 외부 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의 흔적, 안경 파손 사실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였고, 사망시각도 잘못 파악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참고인의 진술이 짜맞추어진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당시 현장사진이 보관되어 있지 않고, 헌병대 수사기록에는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이 누락되었으며, ○○사단 헌병대는 임의로 수사기록을 편집하여 수사기록을 신뢰할 수 없었고, 헌병대가 제출한 헌병속보 외 추가 속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사망 사건 기록의 영구보존이 요구된다.

□ 진정 제46호 박성은 사건

인적 사항	◦ 1969년 12월 10일생, 군인(이병, 방위병)
사건 개요	◦ 박성은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을 하여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1주일간 영창을 다녀온 후, 1990년 5월 23일 귀가 하여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날 아침 자택근처 유치원 놀이터에서 음독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사단 헌병대는 박성은이 평소 내성적 성격으로 태권도 미숙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창 수감 등 군복무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음독자살한 것으로 추정, 수사를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은 농민운동가인 형의 영향으로 광주농고 시절부터 농민 집회와 시위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 1990년 4월 9일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사단 경비대대로 전입되었다. 군내 소요진압훈련 때문에 심적인 갈등을 겪었고, 태권도 교육훈련에서는 자세가 잘 나오지 않아 조교들로부터 구타를 심하게 당하기도 하였다. ◦ 박성은은 5월 15일 부대에 출근하지 않았다가, 5월 17일 징계 위원회에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아 5월 17~23일 상무대 영창에 수감되었다. 5월 23일 12:00 영창을 나온 박성은은 22:00경 친구와 헤어진 뒤 다음날 06:00경 광주 중앙교회 유치원 놀이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사체로 발견되기 전 8시간의 행적은 파악할 수 없었다. ◦ ○○사단 헌병대는 최초 유족들이 농약 냄새를 맡았고, 구토물에 대한 감정결과 치사량의 유기인제류가 검출되었고, 검안의 '급성약물중독의 호흡장애 및 폐부종에 의한 사망' 의견을 종합해 자살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농약냄새에 관한 증언이 엇갈리고 구토물 또한 박성은의 것인지 확실치 않으며, 폐부종 또한 부검을 실시해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병대의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직전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혀야 하며, 농약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군부대에서 유족들이 돈을 뜯으려 한다고 왜곡한 점은 사과해야 한다.

□ 진정 제47호 임기운 사건

인적 사항	◦ 1922년 12월 27일생, 목사, 부산신학교 운영위원장, 감리사
사건 개요	◦ 1980년 7월 18일 부산지구계엄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당시 합수단의 관련자들은 반체제 인사에 대한 '순화교육'이라 하였음)을 받던 중, 7월 21일 12:30경 혼수상태에 빠져 부산지구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6일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임기운은 1980년 7월 19일 09:00경 부산지구합동수사단에 임의 출석하여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1일 12:50경 조사실에서 자술서를 쓰다가 졸도하여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졸중의 응급조치로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았다. 가족의 요청으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6일 23:00경 뇌교부 뇌일혈로 병사하였다. 당시 부산지구합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임기운에 대해 경어를 사용하는 등 모욕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엄당국은 임기운을 포함한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계엄포고령 위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 등의 이유로 합동수사단(삼일공사)에 소환, 구금 상태에서 순화교육을 하였다. ◦ 합동수사단은 임기운을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3일 동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임기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면서 진술을 강요하였다. 이런 모욕과 언쟁으로 임기운은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되면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합수단에서는 임기운의 사망 이후 직원을 병원과 임기운의 집과 교회 등지에 상주하게 하여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향후 과제	◦ 불법 구금, 강압수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진정 제48호 정인택 사건

인적 사항	◦ 1968년 1월 13일생, 학생(연세대 전자공학과 1년)
사건 개요	◦ 1988년 1월 7일 학교 도서관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다 귀가 중,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아파트 앞에서 두부를 심하게 다쳐 쓰러진 채 다음날 00:10경 발견되어, 뇌수술 등 9년간 치료를 받다 1996년 6월 6일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강동경찰서는 정인택이 자신의 아파트 출입구 화단에서 한 쪽 다리가 화단 모서리의 철근구조물에 걸려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에 일어난 자기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추정하였다. ◦ 정인택의 가족들이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여, 1988년 4월 25일 '자기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추정되나 미제처리 후 계속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미제처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정인택은 1986년 연세대에 입학하였으며, 1987년 4. 13 호헌조치 이후 학내외에서 벌어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정인택은 공명선거감시단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고, 투·개표시 충북지역 참관인으로 활동하였다. ◦ 동료들은 정인택이 학생회, 언더 써클, 동아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으며,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나 국가안전기획부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정인택은 사고 직후 강동성모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1990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9년여의 투병 끝에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위해 활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정인택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진정 제49호 한영현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3월 1일생, 군인(이병), 한양대 2년 제적 후 강제징집
사건 개요	◦ 한영현은 1983년 6월 27일부터 실시된 부대거점 방어훈련 중, 7월 2일 09:42경 숙영지에서 10m 떨어진 참호에서 M16 소총 탄환에 의한 머리부위 총상을 입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사단 헌병대는 한영현이 평소 불우한 가정형편 등으로 삶을 비관하다 소속대 훈련중 분대장의 탄입대에서 실탄 1발을 절취한 후 참호 속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한영현은 한양대에서 탈반동아리 활동과 부천지역에서 야학활동을 벌이던 중 1983년 3월 29일경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4월 2일 강제징집되었다. ◦ 한영현은 육군 ○○사단 신병교육 훈련 중 ○○보안부대에서 1주일간 '녹화사업' 심사를 받았으며 이때 운동권 동료들에 관한 진술을 강요받았다. 녹화사업 심사 후 보안사령부는 한영현에게 프락치 활동을 종용하였다. ◦ 한영현은 6월경 프락치 활동을 명목으로 주어진 휴가로 서울에 왔으나, 자신으로 인해 타격받을지도 모르는 운동권 선후배들은 만나기를 피하였고, 죄책감과 앞으로의 프락치 활동 요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했다. ◦ 극도의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던 한영현은 더 이상의 보안사공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983년 7월 2일 훈련 중 병커에서 자살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한영현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 한영현에 대한 프락치공작 담당 직원 및 구체적인 활용 내용을 기무사령부의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었다. ◦ 한영현에 대한 보안사령부의 심사자료, 활용자료 등은 기무사령부가 협조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응분의 보상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진정 제50호 김 영 환 사건

인적 사항	◦ 1965년 2월 15일생,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
사건 개요	◦ 김영환은 1988년부터 '한겨레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통일', '군축' 문제를 주제로 한 글을 발표하였다. 1991년 4월 25일 16:00 '한겨레사회연구소'를 퇴근한 뒤 다음날 연락 없이 결근하였다가 27일 09:00에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자는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서울 중앙경찰서는 김영환의 자취방에서 사체를 검안하였으나, 외상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1991년 4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하였고, 그 결과 사망원인은 '대동맥 파열로 인한 흉강내 출혈사'로 밝혀졌다. 중앙경찰서는 타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김영환은 1987년 여자친구와 다투다 쓰러져 고려대학교 부속 혜화병원에서 심장대동맥류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곤 하였다. ◦ 김영환은 후배의 집에서 1991년 4월 24일 잠을 자고 25일 아침에 한겨레사회연구소로 출근하였다가 16:00경 퇴근하였고, 17:00경 남녀친구 3~4명과 함께 자취방에 도착하였다. 다시 밖으로 나갔던 김영환은 26일 00:00시를 전후해 자취방에 들어와 불을 켜 채로 누워 있다가 심장대동맥이 파열되어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집 주인에 의하면 김영환이 1991년 4월 25일 17:00경 남녀친구 3~4명과 함께 자취방에 들렀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확인할 수 없어 김영환의 사망 전날 퇴근 이후 집에 들어올 때까지의 행적을 밝힐 수 없었다.

□ 진정 제51호 정 도 준 사건

인적 사항	◦ 1971년 1월 1일생, 군인(이병), 국민대학교 법학과 휴학
사건 개요	◦ 정도준은 육군 ○○사단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훈련기간에 주둔지에서 잔류하였다가, 세면장 천정 부분의 수도파이프에 자신의 적색 태권도복 끈에 목을 매달아 사망한 변사체로 1992년 4월 24일 00:05경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육군 25사단 헌병대는 정도준이 소속대의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재고 파악 등 업무가 미숙하고 실수가 잦아 선임자인 방위병 상병 최○○부터 연일 심한 질책을 받는 등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속대대가 훈련으로 출동한 기간 중에 잔류하면서 이동 PX판매를 나가는 부담감 때문에 소속대의 16중대 세면장의 천정 수도파이프에 자신의 적색 태권도복 끈을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헌병대 수사에서는 정도준이 자살한 원인으로 PX 관리병 생활의 부적응을 주된 이유로 들었으나,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정도준은 내무반 생활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응을 하지 못하여 대대장이 관심사병으로 선정, 관찰하기도 하였다. ◦ 경계병 김○○ 등은 1992년 4월 23일 21:00 이후 내무반을 몰래 빠져 나와 16중대 세면장과 PX 사이에 있던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지만, 이상이 없어 23:30경까지 있다가 내무반으로 돌아가 취침하였다. ◦ 1992년 4월 24일 00:05경 상병 이○○이 물을 뜨러 세면장으로 갔다가 정도준이 목을 맨 것을 발견하여 지휘간부들에게 알렸고, 헌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은 보전되었다. ◦ 여러 법의학 감정은 정도준의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부대 상황에서 부재자투표와 관련된 가혹행위는 없었던 점, 사고현장의 정황 등으로 보아 정도준이 제3자에 의해 타살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정도준이 1992년 4월 23일 19:30경 PX 근무를 마친 뒤 4월 24일 00:05경 사체가 발견되기까지의 행적은 밝힐 수 없었다.

□ 진정 제52호 손윤규 사건

인적 사항	◦ 1923년 10월 6일생, 재소자(대구교도소)
사건 개요	◦ 손윤규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 1976년 3월말경 동료들과 단식하다가 8일만에 병사로 옮겨져 4월 1일 세 번째 강제급식을 받고 2시간만인 19:20경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윤규는 8·15해방 이후에 남노당에 가입, 활동 중 1948년 4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0개월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1950년 10월부터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55년 6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1960년 10월 31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손윤규는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생활 기간 중인 전향공작 전담반 요원인 박○○에 의해 1974년 6월 전향서를 강제로 작성한 후, 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실시, 3회에 걸쳐 강제급식을 당하였고 전향처리 되지 않았다. ◦ 1976년 3월 24일 대구교도소 전향공작전담반 요원인 박○○로부터 강제전향 공작을 받고, 다음날 아침부터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교도소 측에서는 3월 27일과 30일에 2차례 강제급식을 실시하였고, 4월 1일 죽물 2그릇을 강제급식하였다. ◦ 강제급식 이후 약물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부소장 배○○이 '형집행정지 건의하고 가족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여, 17:40경 대구지방법원 검사 김○○로부터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손윤규는 17:20경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은 인정) ◦ 소장 이○○ 등이 손윤규에게 강제급식을 실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치사죄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지는 아니한다.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향제와 유사한 준법서약서의 폐지와 '국가인권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 손윤규의 묘는 표식도 없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이므로, 관리책임이 있는 대구교도소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진정 제53호 한희철 사건

인적 사항	◦ 1961년 2월 11일생, 군인(일병),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4년 휴학
사건 개요	◦ 1983년 12월 11일 04:25경 육군 ○○사단 내 비문합동보관소 경계근무 중 경계호 내에서 가슴 부위에 3발의 총상을 입은 채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사단 헌병대는 한희철이 1983년 12월 11일 04:25경 경계근무 중 M16소총을 흉부에 밀착시키고 자동으로 3발을 격발시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현장에 남긴 유서 등으로 보아 타살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고, 한국의 민주정치의 미흡성을 비판 자살하였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희철은 수배자 신○○의 검거시 발각된 메모가 문제가 되어 1983년 12월 5~8일 사이에 보안사령부 ○○분실에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동반한 조사를 받으며 운동권 동료들을 다수 진술 하였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 1983년 12월 10일 부대에 복귀한 후 보안사령부에서의 고문 수사에 대해 부대 동료들에게 말하였고, 고문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양쪽 허벅지의 시커먼 멍을 보여주었다. 한희철은 보안사의 고문수사를 고발하고 동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부관부 사무실에서 유서와 '성남 Y 총무에게 드리는 글'을 썼고, 이를 수첩 등 자신의 물건과 함께 동료들에게 전달한 뒤 12월 11일 04:25경 경계호 안에서 M16을 연발 위치에 놓고 발사, 자살하였다. ◦ ○○사단 헌병대장 유○○는 보안사령부 관련성을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군의관은 사체검안도 형식적으로 하였으며, ○○보안부대 관계자는 유서 중 '보안사령관 전두환 귀하'라는 부분을 임의로 손괴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였다. 한희철의 사망 후 보안사령부는 집을 압수수색하고 한희철의 운동권 동료와 조직을 파악하려 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 한희철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무사령부는 한희철 조서외에 운동권 동료와 조직에 대한 한희철의 조사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 한희철에 강압 고문수사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 ◦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응분의 보상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진정 제54호 변형만 사건

인적 사항	◦ 1934년 4월 12일생, 보안감호수용자(청주보안감호소)
사건 개요	◦ 변형만은 청주보안감호소 수용 중 감호소 측의 부당한 처우에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단식으로 항의하다 1980년 7월 11일 감호과장 오○○의 지휘 하에 교도관들이 피보안감호자들을 감호과로 연행하여 고무호스를 입안에 집어넣고 소금이 영겨있는 진한 염수를 퍼넣는 강제급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만은 1958년 5월 14일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3년 3월 14일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사회안전법 감호처분 2년을 확정받아 1975년 8월 16일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1977년 2년 갱신되어 청주보안감호소로 이감되었다. ◦ 변형만은 '다시 수용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사회안전법이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서적 압수 조치를 계기로 1980년 7월 9일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참여하였다. ◦ 1980년 7월 11일 이○○ 감호소장은 강제로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호과장 오○○와 의무과장 오○○를 호출, 강제급식을 지시하였고, 감호과사무실에서 강제급식이 실시되었다. 변형만은 19:15경 강제급식을 받던 중 의식을 잃은 후 피를 토하였다. 의무실로 옮겼으나 22:30경 사망하였다. ◦ 사체는 1980년 7월 13일 14:30경 청주보안감호소 묘지에 가매장하였고, 의무과장 오○○만 면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으며, 다른 징계 조치는 없었다. 당시 사건지휘 검사 김○○는 위원회 조사에 대해 본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을 거부'한다고 회신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형만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 감호소장 이○○ 등의 강제급식으로 사망케 한 것은 형법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다.
향후 과제	◦ 사회안전법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보안감호 처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이들에게 국가가 취해야 할 보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진정 제55호 최은순 사건

인적 사항	◦ 1963년 11월 17일생, 군인(이병), 동국대학교 제적 후 강제징집
사건 개요	◦ 최은순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시위 예비·음모 혐의로 연행되어 4~5일간 조사를 받다가 1983년 3월 29일 강제징집되었다. 육군 ○○사단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1983년 8월 14일 05:00경 철책 51초소에서 상병 김○○과 다투다가 김○○ 쏜 총에 목을 맞고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육군 ○○사단 헌병대는 최은순이 1983년 8월 13일 20:00~다음날 05:30 사이에 상병 김○○과 전방 철책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의 새벽 순찰시 두 차례나 졸다가 적발되어 심하게 질책을 당하였고, 상병 김○○이 다른 초소를 갔다온 사이에 최은순이 또 다시 잠을 자자 4~5회 폭행과 기합을 주었고, 이에 최은순이 강력히 반발하여 서로 싸우다가 최은순이 총기를 잡으려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위협을 느낀 김○○이 M16 소총으로 실탄 1발을 우발적으로 발사하여 05:10경에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은순은 1983년 3월 '반파쇼 민주화투쟁 시위'를 예비, 음모한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 정보과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같은 달 29일 강제징집되었다. ◦ '특수학적변동자'로서 부대 지휘관들의 동향 관찰을 받아야 했고, ○○보안부대 오○○중사는 수시로 최은순의 동향을 파악했고, 직접 면담하기도 했으며, 편지 등을 검열하였다. ◦ 최은순이 1주일 가량 '녹화사업' 조사를 ○○보안부대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안부대 관계자들 대부분이 부인하고, 특히 심사장교 김○○이 미국에 거주하여 조사하지 못했다. ◦ 최은순의 사망 과정에 대해서는 헌병대 수사 결론을 신뢰할 수 있으나, 최초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내렸다가 유족들의 항의 끝에 강압수사를 통해 김○○의 자백을 받아내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 최은순이 녹화사업을 받았는지를 기무사의 자료 비협조와 당시 ○○보안부대 심사장교 김○○을 조사하지 못하여 밝히지 못했다.

□ 진정 제56호 최석기 사건

인적 사항	◦ 1931년 10월 24일생, 재소자(대전교도소)
사건 개요	◦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74년 4월 4일 20:05경 5사동(가 병사 특수방) 독거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교도소 '좌익수전향공작반'은 1973년 8월 6일 교무과장 김○○을 중심으로 유○○, 나○○, 이○○ 등 3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반에 교회사와 교회사보 등 2명씩 배치되었다. 교무과장 김○○은 주재회의를 통하여 각 반에 비전향좌익수형자를 약 30명씩 A, B, C급으로 분류하여 최석기를 나○○ 조에 배당하였고, 전향좌익수형자들도 전향 후 추수지도라는 동향관찰을 위해 배당되었다. ◦ 좌익수전향공작반은 폭력전과자 조○○을 동원하여 강제전향공작을 진행하였으며, 조○○은 1973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안○○ 등을 전향시켰다. ◦ 조○○ 등 2명은 1974년 4월 4일 격리 1방에서 최○○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바닥에 눕혀 놓은 후 전향을 강요하며 폭행하였다. 한 명은 가슴 쪽에 올라타고, 다른 한 명은 다리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배 등 몸 전체를 마구 폭행하여 결국 20:05분에 최석기를 사망하게 하였으며, 사체는 격리사동 옆 창고에 보관하였다. ◦ 1974년 4월 5일 충청남도경찰국 산하 충남과학수사감정소로 사체를 옮긴 후 4월 6일 16:00경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현○○ 지휘하에 부검을 실시한 후 심장마비사로 처리하였다. ◦ 교도소는 부모에게 사망 원인을 은폐하였고, 부모는 청주 소재 화장터에서 화장하였다. ◦ 중앙정보부 대전지부 좌익수형자 전향공작담당자인 박○○은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간부들과 검찰의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기로 상의하고, 사망 3일 후에 대전지검에 변사사건을 보고하여 심장마비사로 처리하였다. ◦ 사동근무자 2명만 감봉 1개월,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은 인정) ◦ 최석기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조○○이 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향후 과제	◦ '국가인권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전향제도와 비슷한 준법서약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진정 제57호 박용서 사건

인적 사항	◦ 1921년 7월 5일, 재소자(대전교도소)
사건 개요	◦ 1974년 7월 20일 자신의 거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교도소 '좌익수전향공작반'은 1973년 8월 6일 교무과장 김○○의 지휘하에 3개반으로 운영되었으며, 박용서는 유○○조의 김호남에게 배당되었다. ◦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은 일반수형자 중 전향시책에 동조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특별사동의 사방청소부 직책을 부여하였다. 사방청소부들은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의 묵인 하에 좌익수형자를 폭행하면서 전향을 강요하였다. ◦ 1974년 7월 19일 사방청소부 이○○과 교도관 김○○은 박용서를 격리사동 1방으로 전방한 후 13:00~15:00까지 장부보다 약 품 개수가 적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김○○은 주먹으로 박용서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은 박용서의 전신을 발로 차거나 바늘로 찌르면서 답변을 강요하였다. 박용서는 16:00경 이○○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거실인 8사동 6방으로 돌아왔다. ◦ 박용서는 22:00경 옆방 양○○에게 '바늘로 온몸이 찔렸다. 정말 이렇게 살아 있으면 무엇하나, 교도소의 만행이 너무 한다'고 말하였다. 박용서는 1974년 7월 20일 01:00~03:00 사이에 작은 유리파편으로 자신의 좌측충경동맥과 우측대퇴동맥을 절단하였고, 05:30경 실혈사로 사망하였다. 거실 벽에 세로 방향으로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겼다. ◦ 대전교도소 소장 등 간부들과 중앙정보부 대전지부 박석준은 전향강요로 인한 자살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대전교도소는 야간 당직자 3명에게 '견책',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박용서를 폭행한 김○○은 교도소 측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은 인정)
향후 과제	◦ '국가인권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전향제도와 비슷한 준법서약서제도 폐지해야 한다.

□ 진정 제58호 김용성 사건

인적 사항	◦ 1916년 8월 20일생, 보안감호수용자(청주보안감호소)
사건 개요	◦ 사회안전법에 적용되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중이던 김용성은 사회안전법 폐지와 피보안감호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농성 과정에서 1980년 7월 11일 감호소측의 강제급식으로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성은 1964년 6월 7일 간첩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7년 6월 10일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에 사회안전법에 의해 2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이감되었고, 1978년 11월 18일부터는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1979년 4월 27일 보안감호처분 기간이 갱신되었다. ◦ 김용성은 '이미 주어진 형량을 다 치르고 만기출소한 사람인데 이렇게 구금시켜 놓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서적압수 조치를 계기로 1980년 7월 9일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참여하였다. ◦ 1980년 7월 11일 이○○ 청주보안감호소장은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호과장 오○○와 의무과장 오○○를 호출, 강제급식을 지시하였고, 감호과 사무실에서 강제급식이 실시되었다. 김용성은 19:30경 강제급식을 받던 중 갑자기 '억!', '억!' 소리를 내다가 고개를 옆으로 떨구면서 쓰러졌고 19:50경 사망하였다. ◦ 김용성의 사체는 다음날 16:05경 아들에게 인도되어 경기 여주군 소재 남한강공원묘지에 안치되었다. 오○○ 의무과장만 면직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은 징계 조치가 없었다. 사건지휘 검사 김○○는 '그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을 거부'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용성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 소장 이○○ 등이 강제급식을 실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되어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다.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이 입은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조치 ◦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도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조사

□ 진정 제59호 안치웅 사건

인적 사항	◦ 1963년 10월 17일생, 무직
사건 개요	◦ 안치웅은 1982년 서울대에 입학하여, 1985년 6월 29일 대우어패럴사건으로 1년 복역한 후 사면되어 1987년 9월경 4학년 2학기 복학하여 1988년 2월 졸업하였다. 1988년 5월 26일 9시경 평소와 같이 외출하였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안치웅 부친은 2000년 9월 2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실종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안치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소재확인 수사를 위해 부모에게 550명의 신원불상 변사자 영상자료를 열람케 하였고, 전국보호수용시설 458개소, 출입국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생사 여부 및 소재확인이 불가하여 2001년 2월 28일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치웅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88년 5월 26일 이후의 신원불상 변사기록 1,507건을 조사하였으나 안치웅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된 신원불명 변사자 부검기록 중 안치웅의 연령과 유사한 27건을 확인하여, 이중 실종시기(1988. 5. 31.) 및 실종장소(강동구 암사동 암사수원지)가 비슷한 1건을 발견하였으나 보존기간이 지나 변사기록이 폐기되어 지문 및 소지품 등을 대조할 수 없었고, 벽제리 묘지에 1988년 6월 18일 매장되었다가 1995년 5월경 화장되었으므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안치웅은 대학재학 중 독재정권 퇴진, 학도호국단 폐지 총학생회 건설 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였다. 1985년 6월 29일 구로공단 동맹파업 때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의 농성에 참여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986년 7월 4일 만기출소하였다. ◦ 강동경찰서 대공과 형사는 대우어패럴 농성사건 서류에 안치웅이 있어 모친이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가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하므로 경찰의 중점관리 대상자일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기록이 모두 폐기되어 동향 관찰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 북파공작 특수부대원이라는 박○○은 1986년 여름경 학생운동을 하였던 안모라는 대학생을 납치·살해한 후 저수지에 수장했다고 서울방송(SBS)에 제보하였으나, 박○○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진정 제60호 노진수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3월 28일생, 학생(서울대 법학과 1년)
사건 개요	◦ 1981년 서울대 입학하여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학생운동을 하던 중, 1982년 4월 17일 행방불명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행방불명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진수의 생사 여부 및 신원확인을 위해 1982년 5월 실종을 전후하여 발생한 신원불상의 변사사건 자료 등을 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악경찰서 등 11개 서울지역 경찰서에 의뢰하여 조사하였으나 유사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수 변사자료가 폐기되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 노진수는 법과대학 내 현실참여적인 씨클인 '피데스'에 가입하고, 대학 1학년 대표로서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학생총회에 참여하였으며, '5.18광주민중항쟁' 1주년을 기념하는 대동제 행사에 1학년 촌극을 상연하기도 했다. 당시 학년대표를 운동권 중에서 선출하면 공간기관에 체포될 가능성이 있어 운동권에 우호적인 학생을 선출하였음에 비춰볼 때 노진수는 학생운동에 동조하는 정도였다. ◦ 노진수가 경찰 등 공간기관으로부터 동향 관찰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관악경찰서 보안자료 중 협조원명부(1982년)에 노진수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프락치 활동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 유가족은 노진수가 1982년 5월말경 기관원으로 보이는 2명에 의해 연행된 것 같다는 한림독서실 총무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 다른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 전직 북파공작원이 정보사의 지시에 의해 노진수를 살해하여 저수지에 수장하였다는 언론사(KBS 추적60분)의 제보가 있어,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도원저수지에 대한 유골 발굴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고, 제보자 박○○의 소재불명 등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규명 불능 ◦ 전직 북파공작원 박○○의 제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향후 과제	◦ 노진수가 기관원에 의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한림독서실 총무의 신원 및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

□ 진정 제61호 심오석 사건

인적 사항	◦ 1952년 3월 2일생, 학생(경북대학교 의과대 1년)
사건 개요	◦ 1976년 11월 14일 등교 중에 신원불상의 친구로부터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삼랑진으로 피신차 가출 후 행방불명됐다.
과거 수사결과	◦ 경북경찰청은 1977년 1월 23일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가족이 행적 확인 중이라는 내용의 문제학생 동향보고를 치안본부에 한 바 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오석은 대학에 입학한 1972년부터 교련반대, 유신정권반대 등을 주장하며 각종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였다. 1974년 12월 5일 '경북대 의대 유신반대 철야농성'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측으로부터 주동자 및 배후조종 혐의로 12월 13일부터 1975년 1월 29일까지 47일간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 경찰기관은 심오석을 '문제학생 C급'으로 분류하여 거주지 및 학교 등지에서 동향관찰을 하였으며, 경북대 의대에서도 '선도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였고, 행방불명 당시 대구남부서 대공계 형사들이 집 주변에서 매복 감시하였다. ◦ 심오석이 1975~76년경 중앙정보부 대구지부(일명 앞산)에 연행되어 전기고문 등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연행되는 장면이나 고문의 흔적을 보았다는 진술이 없어 실제로 연행 또는 고문을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심오석은 집을 나간 후 의대 친구에게 "서방정토로 떠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 1통('삼랑진우체국' 소인, 뒷면에 '<피봉>에서')을 보냈고, 여동생이 삼랑진에 가 '피봉'이란 술집에 들러 여종업원에게 술을 사주고 편지를 썼다는 행적만 확인하였다. ◦ 심오석의 실종 경위와 관련된 중요 참고인들(여동생, 경북대 의대 담당 형사 등)이 사망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없었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변사 및 신원확인 기록 등 사건 관련 기록이 폐기되었다. ◦ 사찰 은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교종단 승적을 조사하였으나 등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진정 제62호 정성희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6월 14일생, 군인(일병), 연세대 1학년 재학중 강제징집
사건 개요	◦ 1982년 7월 22일 육군 제○○사단 대학생 전방입소자들과 철책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다음 날 00:10경 근무지에서 연발의 총성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정성희는 연세대 1년 재학중 1981년 11월경 학원소요사태로 연행되어 군에 입대한 관계로 감시를 받았고,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전방실습 대학생과 근무중 자살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희는 1981년 홍사단아카데미와 학내에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1월 25일 학내시위에서 연행되어 동료 14명과 함께 강제로 입영되었다. ◦ 부대생활 중 지휘계통과 보안부대의 관찰, 면담 등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 정성희가 사망하기 전 입대동기가 사신(私信)관계로 보안사령부에 구속되었고, 학교 선배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주범으로 오인되어 보안사령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성희와 학교동료들이 언급되었고, 경찰과 보안부대에서 조사가 뒤따랐다. ◦ 정성희는 사망 몇일 전부터 동료들에게 죽음을 예시하였고, 사망 바로 전 전방실습생에게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장영자사건에 대해 물었다. ◦ 군 동료들과 소대장, 중대장, 보안부대 병사 등은 휴가 전후 정성희가 보안부대에 호출되어 갔다고 하나 보안부대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 사건 이후 중대장과 소대장은 징계위에 회부되어 경고를 받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정성희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화사업 실시 이전의 강제징집된 특수학적변동자들에 대한 보안사령부의 동향관찰 및 조사 체계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나, 기무사령부의 비협조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 명예졸업장 수여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이 있어야 한다. ◦ 외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지병악화, 생활고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진정 제63호 김용권 사건

인적 사항	◦ 1964년 6월 10일생, 군인(카투사, 상병), 서울대학교 3년 휴학
사건 개요	◦ 김용권은 1987년 2월 18일 07:25 정신과 진료를 위해 용산에 있는 ○○병원으로 출발하여 진료를 받은 후 20:08경 부대 위병소를 통해 복귀하였다. 2월 20일 10:4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군단 헌병대는 김용권이 계속되는 불면증과 지병인 정신병 증세를 비관하여 오던 중, 1987년 2월 15일부터 소속대 병력이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하여 혼자서 생활하게 된 것을 기회로 2월 20일 10:40경 막사 내에서 전기스탠드 줄로 2층 침대 난간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용권은 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며,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 1985년 10월 카투사에 자원 입대하였고, 소속대에 배치되어 작업병으로 근무 중 보직변경을 청탁하기 위해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추○○을 모친과 함께 만났고, 이후 추○○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근무부대인 ○○보안부대로 김용권 혼자서 찾아갔다. ◦ 보안부대가 김용권의 학교 동료 중에 민민투, 구학련 등의 핵심 성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김용권을 프락치로 활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현재 추○○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확인이 불가하였다. ◦ 김용권의 사망 이후 보안사령부 3처 수사단에서 가족들을 감시하고 장례 등을 중용하는 등 관여를 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서울대생들을 조사한 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 및 조사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기무사령부의 비협조로 입수하지 못했다. ◦ 김용권의 사후 보안사령부가 유족에게 고통을 주었던 점에 대해 기무사령부는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 유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 김용권이 질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 소재가 규명되어야 한다. ◦ 미군부대 내의 한국인 사망사고 처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진정 제64호 최우혁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3월 4일생, 군인(이병), 서울대학교 3학년 휴학
사건 개요	◦ 최우혁은 1987년 4월 28일 입대, 7월 2일 육군 ○○사단 전입되어 정보과 서기병으로 근무하였다. 9월 8일 22:00~24:00경까지 상황실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복귀한 후 야간작업을 한 다며 내무반을 나가 다음 날 00:50경 불에 타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에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육군 ○○사단 헌병대는 최우혁이 평소 개인적 성격과 복무 부적응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상황실 상황판을 지우기 위해 비치한 휘발유 약 0.9ℓ를 전신에 뿌리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전신 2~3도의 화상을 입어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최우혁은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연행되어 구류를 살고 부상까지 당하자 이를 염려한 가족들의 강권에 못 이겨 군에 입대하였다. ◦ 학생운동권 출신임에도 1987년 7월 2일 비밀취급인가(2급)가 필요한 정보과 서기병으로 보직 변경되었다. 비밀취급인가는 8월 5일 이루어졌으나 보직변경 과정이 분명하지는 않는다. ◦ 1987년 9월 4~7일까지 정보과장으로부터 '적 위협분석' 초안문을 정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초안문 16매 중 11매를 실수로 문서세절기에 넣어 세절하여 버렸다. ◦ 최우혁은 사망 이후 작성된 보안사령부의 '서울대 운동권 동행 파악 대상자' 카드(387명)에 포함되어 있었고, ○○보안부대장과 보안부대 사병들 일부가 관찰대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보안사의 관찰이 최우혁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 최우혁의 죽음에 타살 가능성은 적으나 자살 동기에 대한 과거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보안사의 관찰 및 조사 가능성은 높으나, 기무사령부의 비협조로 밝힐 수 없었다. ◦ 사건 발생 당시 군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의문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군내의 문제점만을 생각하여 조기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의문이 증폭되었다.

□ 진정 제65호 박인순 사건

인적 사항	◦ 1960년 3월 2일생, 한신대 대학원생
사건 개요	◦ 박인순은 1988년 6월 23일 10:00경 한신대학교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유○○는 1988년 6월 25일 한미병원 사체실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사체가 너무 부패하여 사인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하고 외상이 전혀 없으며 독극물 등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988년 7월 14일 타살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 박인순은 민중가요집 '메아리'를 발간하였고, 건국대 영자 신문에 4.13호헌조치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였으며, 4.13호헌조치에 항의하여 삭발단식투쟁을 하였고, 6월항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회, 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박인순은 1988년 한신대 원우회장의 자격으로 6.10 남북학생회담에 참여하였다. 박인순은 1985년경부터 1988년 6월 사망시까지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 ◦ 박인순은 사망하기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가슴이 답답하다, 자고 싶다고 하며 방으로 갔으며, 시체가 발견된 기숙사 217호 방문 및 창문의 잠금장치가 안으로 잠겨 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으며, 사체검안서와 부검의사의 의견에서도 심장마비 또는 부정맥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박인순은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진정 제66호 심재환 사건

인적 사항	◦ 1962년 9월 12일생, 노동자(삼화실업 주식회사)
사건 개요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부평 삼화실업에 입사하여 노동운동 중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일에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부평경찰서의 심재환 변사사건기록 및 인천지방검찰청 변사사건기록 사본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당시의 정확한 수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유족 홍수자 등의 진술과 부평경찰서의 1987년 '변사사건 접수부'에 의하면 일반변사 사건으로 종결처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심재환은 대학재학 중에 민주화운동을 했음은 물론, 생산직 노동자로서 또 다른 방식의 민주화 활동을 하였다. 그는 자신과 당시 노동자들 전반이 처해 있던 열악한 삶의 조건과 무권리 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 심재환의 사체가 발견된 자취방의 출입문과 창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는 등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사체로부터 아무런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공권력이 심재환의 행적에 대해 감시 활동을 펴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타살로 보기는 어려웠다. ◦ 관계자들에 대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연일 계속되는 작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 심재환은 노동현장의 소외된 근로대중의 권익을 위해 유복한 가정환경 등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심재환 변사 사건을 접수한 부평경찰서의 당시 관련 재직경찰전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담당 수사관을 확정할 수 없었다.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조사력의 한계로 사건조사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

□ 진정 제67호 김소진 사건

인적 사항	◦ 1966년 9월 27일생, 군인(이병), 목포대 미술학과 제적
사건 개요	◦ 김소진은 육군 ○○사단 소총수로 근무 중, 1987년 7월 30일 유격훈련장에서 소속대 병력들이 유격훈련 학과출장을 한 사이 현지 군무이탈로 행방불명되었다가 1999년 8월 22일 동 훈련장으로부터 1.5~2km 떨어진 감악산 5부 능선의 암석지대의 급경사 지점에서 유골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제25사단 헌병대는 김소진이 1987년 7월 23일~8월 1일까지 예정으로 사단 유격훈련장에서 훈련 중, 허약한 신체조건 및 복무부적응으로 군복무에 염증을 느끼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7월 30일 07:50경 숙영지에서 동료들이 훈련에 참가한 틈을 이용하여 야산으로 현지 군무이탈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 1999년 8월 22일 경기 양주군 남면 소재 유격훈련장 부근 ○○산 정상 5부 능선 암석지대 약 45도 경사지에서 김소진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어 채수사가 실시되었다. 국립과학연구소의 슈퍼임포즈 검사 결과와 전투모 싸인 등을 근거로 발견된 유골을 김소진의 것으로 판단하였고, 유격장을 이탈하여 도주 중 급경사 지역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위원회에서는 국립과학연구소의 슈퍼임포즈 검사 결과, 유골 발견 현장에서 수집한 전투화와 전투모의 생산 및 납품회사 조사 결과, 전투모 안창 싸인 감정 결과, 고려대 법의학연구소의 유골 친자확인 유전자 감정 결과(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분석) 등을 종합하여 유골이 김소진의 것임을 밝혔다. ◦ 유골 발견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유격주기표 번호 72는 김소진의 것이 아니고, 참고인들이 당시 유격훈련장에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감정한 결과 김소진의 유격주기표 번호는 '10-34'였다. ◦ 김소진이 타살 및 유기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과학적인 유골 감정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 진정 제68호 이재근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8년 8월 10일생, 성균관대학 졸업, 무직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7월 중순경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가 같은 달 29일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근은 마포대교 남단 제3교각 한강 수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잠수부에 의해 인양되었고 마포경찰서에서 변사사건으로 접수하여 대홍의원 의사의 사체검안서, 친척들의 진술을 근거로 타살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근은 1980년 9월 10일 군에 입대, 보안사령부에 차출되어 인천 소재 ○○보안부대에 전입되었으며, 전입하는 날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는 등 군기를 빙자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받아왔다. 1981년 12월 12일 '하악 좌측 우각부 연골증식증'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82년 3월 2일 퇴원하였다. 이재근의 정신질환 증세는 고참병의 폭행 때문에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 1983년 1월 20일 전역 후 복학하여 1986년 2월 대학을 졸업했으며, 1986년 6월경 1주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부친은 예비군훈련 과정에서의 집단구타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 수중에서 잠수부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사체의 부패가 심하여 부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당시 안기부 직원이었다던 삼촌 등 유족들이 자살을 인정하여 부검치 않고 발견 다음날 화장 처리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각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사자를 부검도 하지 않고 유족 진술도 받지 않은 채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

□ 진정 제69호 권두영 사건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9년 9월 2일생, 한국광물(주) 대표
사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두영은 1992년 8월 28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중 1993년 1월 14일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이후 부검을 실시하여 자살로 처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두영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65년부터 1978년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서 노동경제연구실장 및 소장을 맡아 노동·농민운동 지도자를 육성하였다. 평소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고, 1991년 뉴욕에서 '코리아영세중립화추진본부'를 결성하는 등 통일운동을 했고, 민중당 고문 등의 진보정당 활동을 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사관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권두영의 방북 목적이 사업가로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것인지 간첩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방북기간 중 북으로부터 받은 미화 2만 불이 단순한 여비인지 공작금이었는지, 방북기간 중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은 관련자들의 조사가 불가능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권두영의 사망은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자살인 것으로 인정되나 검거나 수사과정 중에 불법적인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기부의 연행과 수사,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진정 제70호 정은복 사건

인적 사항	◦ 1936년 12월 17일생, 가정주부
사건 개요	◦ 1983년 12월 15일 21:00경 급히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행방불명(관련 자료가 폐기되어 행방자 처리 과정 확인 못함)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1979년 12월경에 3개월 과정의 주부아카데미교육을 받았고, 1982년 12월경에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또 1978년 4월경부터 1983년 5월경까지 '생명의전화' 상담원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 국가안전기획부는 1950년대에 월북한 정은복의 고모 정○○이 1970년대 남파간첩 활동 공로로 북한 노동당 연락부장이라는 직책에 오른 것을 인지하고, 정은복 등 친인척을 상대로 약 1년 동안 내사한 결과 간첩혐의점이 있어 1983년 8월 31일에서 9월 20일까지 구금하여 조사하였으나 혐의점 발견하지 못하여 모두 훈방조치하였다. ◦ 정은복은 조사받고 나온 이후에 편지 형식으로 안기부에 보고를 했고, 이화여대 안기부 조정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행려병자 수용시설 등에 정은복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수용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시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단서가 전무하였고, 경찰청의 신원미상의 변사처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정은복과는 유사한 점이 전혀 없었다. ◦ 오랜 시간의 경과로 석방 이후 감시 등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월북 가족에 대한 대공수사가 국가정보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관계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조사를 담당할 안기부 직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 진정 제71호 김제강 사건

인적 사항	◦ 1925년 9월 25일생, 유신건재 대표
사건 개요	◦ 김제강은 1977년 11월 4일 오전에 남산 중앙정보부에 갔다온다고 나갔다가 19:00경 집에 들어온 직후 갑자기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은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 김제강 죽음에 대한 사인조사를 의뢰하였거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인인 김제강의 처는 김제강이 1971년 신민당 정치인 신○○를 통해 당시 300만원을 김대중의 대통령 선거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김제강의 당시 주변인물들도 당시 그가 그만큼 자금 여력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 진정인이 자신을 감시하는 안기부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은 국정원의 전·현직 및 파견 근무자가 아니며, 진정인과 사적인 소송관계를 가진 인물이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진정 제72호 임태남 사건

인적 사항	◦ 1950년 10월 27일생, 노동자(대광고통 운전기사)
사건 개요	◦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4월 3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대광고통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11월 30일 광주 남구 백운동 개별화물 차고지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임태남은 광주서부경찰서와 광주지방검찰청은 발견자 최○○, 유족 서순자 등의 진술내용과 부검의사 정○○가 작성한 감정서 등으로 보아 타살혐의 없어 사인은 동사로 처리하고 1990년 2월 7일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화순지구에서 총기와 다이너마이트를 운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쟁에 참여하였고, 내란실행 혐의로 화순경찰서에 연행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출소 이후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을 당하였지만 5.18부상자동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에 참여하였다. ◦ 1986년 대광고통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민주노조 활동을 하면서 1989년 노동3권 보장,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52일 동안의 파업을 조직하고 이끌었다. ◦ 1989년 11월 29일 회사 동료와 저녁식사 반주로 술을 먹은 후 처남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24:00경 백운동 인근 백○○의 집에 불쑥 들어가 전두환 노태우 물러가라고 외치며 바닥에 누워있는 임태남을 방범대원 3명이 강제로 끌어내었는데, 이후 변사체로 발견되기까지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주월파출소에서 작성·보고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에는 1989년 11월 30일 07:45 개별화물 소장 최○○가 출근길에 임태남의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일 06:00경 개별화물 차고지에서 약 40여m 정도 떨어진 최진남의 집 대문 앞에 임태남이 사망한 상태로 이불에 덮여 있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명(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태남의 사망 전후 주월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행적조사 및 당시 목격자에 대한 탐문조사가 요구된다. ◦ 변사사건 기록상 사체발견자 최○○의 행방불명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 진정 제73호 박태조 사건

인적 사항	◦ ◦ 1948년 2월 14일생, 광업 노동자
사건 개요	◦ 1987년 11월 26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토혈한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전남 화순경찰서는 박태조가 1987년 11월 26일 04:00경 주거지 방에서 취침중 엎어진 상태로 토혈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타살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태조는 5.18광주민중항쟁에 적극 참여, 내란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약 9개월간 수감되었는데, 화순경찰서에서 경찰, 상무대 영창에서 헌병대원, 광주교도소에서 교도관들로부터 몽둥이와 군홧발로 모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 화순군지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5.18관련 홍보활동, 유인물 배포, 5.18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출소 후 사망하기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취직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경제적 사정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통제 등을 복용하며 고통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 ◦ 항상 경찰서 정보과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현상을 가끔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움막집에 혼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에 박태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 국가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가혹행위와 구타 등의 고문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진정 제74호 이수영 사건

인적 사항	◦ 1921년 12월 28일생, 주 프랑스 대사
사건 개요	◦ 1972년 4월 21일 06:00경 주프랑스 대사관저에서 부엌칼에 찔린 채 발견되어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중에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대사관측은 처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였으나 곧 가정 불화로 인한 자살로 수정 발표하였다. ◦ 프랑스 경찰은 자살로 발표하였다. ◦ 1972년 7월 3일경 이수영의 부 이익항이 아들이 타살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영등포지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났다.
위원회 조사결과	◦ 진정인(파리 거주 한인동포 신문 발행인)은 시신의 등 쪽에 7개의 자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체검안서와 사체해부감정서에 의하면 등 부분에는 자상이 없고 흉부에만 세 군데 자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진정인은 중앙정보부가 준비하고 있던 제2의 동백림 사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6년 동안 프랑스 대사를 역임할 정도여서 정부나 대통령과 대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백림 관련자나 당시 프랑스 대사관 근무자들은 이수영이 국가시책을 충실히 따르는 전형적인 외교관으로 제2 동백림사건을 저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진정 제75호 이승룡 사건

인적 사항	◦ 1953년 2월 2일생, 경북대 공업교육과 3년 제명
사건 개요	◦ 1978년 6월 10일 23:00경 경북대학교 교내 숲 속에서 목에 혁대를 감고 누워있는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군 제대 후 미복학, 어려운 가정형편 등 현실을 비판하여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당시 변사사건기록과 부검기록은 각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 이승룡은 경북대학 재학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군부독재 타도를 주장하며 학생운동을 하였다. ◦ 경찰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발생 직전 무렵 이승룡으로부터 일부학생들이 사제폭탄을 제조하여 시위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이후 그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였다. ◦ 대구북부경찰서 정보1과 소속 직원들은 변사체 발견 당일 아침 무렵 이승룡의 방을 수색하여 일기장 등을 가져갔으며, 대구시립병원 영안실과 부검실 주변에 배치되어 유족 및 문상객들에 동향감시는 물론 화장장과 끝분을 뿌리는 동강까지 미행 감시하였다. 또한 이승룡의 동생 이승완은 정보2계장 배○○으로부터 부검 후 급히 화장할 것을 종용 받음과 아울러 장례비 조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 목을 맨 흔적이 없고,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거나 깨물고 있지 않았으며, 대·소변이나 정액 등의 체외 배출 사실이 없었던 점, 변사체 발견현장 주변은 잔가지 없이 높이 자란 아카시아 나무들이라 목을 맨만한 나무가 없었던 점, 허리띠를 목에 감은 다음 나머지 부분으로 나뭇가지에 목을 매기에는 부적합한 점, 유서가 없고, 변사체 발견 당일에는 친구들과 포항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승룡의 사망에는 의사자 특유의 법의학적 자살 증거 및 정황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진정 제76호 김석조 사건

인적 사항	◦ 1944년 4월 22일생, 경북대학교 조교
사건 개요	◦ 1971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소재 속칭 소랑골 뒷산 중턱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당시 검찰과 경찰은 사체 발견 현장에 청산가리 등이 놓여 있는 점에 비추어 자살로 종결하였다. ◦ 사체검안의는 사망시간을 1971년 11월 11일 06:00경으로 추정하였고, 대구지검 검시사건부에 '음독'으로 사인을 기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유족들은 김석조의 고등학교 동기생 모임에서 안기부에 다니는 동기생이 김석조의 죽음과 관련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이야기를 했다는 당사자와 참석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진술하였다. ◦ 유족들은 검안의사 신○○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불로동에서 신외과 원장인 신○○으로 확인되었다. ◦ 유족들은 김석조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로 사형 집행된 여정남과 고교시절 같은 반으로 친분이 있었을 것이므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민혁명당 재건위 관련자나 민청학련 관련자,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 등은 김석조를 모르거나 지하조직 활동을 부인하였고, 대학 동창생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 유족들은 조영래변호사 추모문집을 근거로 조영래와의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입학한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의 은사인 김석조(金碩祚)로 동명이인이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진정 제77호 정종인 사건

인적 사항	◦ 1965년 2월 3일생, 학생(경상대학교 1년)
사건 개요	◦ 진주 경상대 축산과 재학 중 겨울방학 때인 1985년 1월 16일 경남 고성군청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고성군 영오면 신흥부락의 신흥교 독 밑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정종인이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흥교 약 3.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정부 뇌경막 하출혈 및 동사로 사고사한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각하
결정 및 후속조치	
향후 과제	

□ 진정 제78호 김진홍 사건

인적 사항	◦ 1955년 11월 14일생, 무직
사건 개요	◦ 1990년 7월 14일 19:30경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진관리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는 별도의 부검없이 수사를 종결하였으며, 변사기록은 보존기관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진홍은 1975년 서울대에 입학하여 '대학생 청년불교 씨클'과 '푸른벗'이란 학술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민주화운동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1981년 2월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8월 29일 군에 입대하여 10월 17일부터 ○○군수지원사령부 수집소대에 배치되었다. ◦ 김진홍은 1982년 5월 31일 12:20경 사병식당에서 100여 명이 배식순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2~3회 외쳤다. 12:40경 대대장실에서 대대장과 면담 후 ○○보안부대에 신고되었고, 13:20경 ○○보안부대에 의해 연행되어 13:30~18:10경 조사를 받았으며, 18:45경 국군창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 병원 후송 후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 김진홍은 1982년 10월 15일 수도통합병원에서 '망상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의병제대하였다. 서울 중부경찰서 대공과는 1982년 10월 15일~1989년 10월까지, 남양주경찰서 대공과는 1989년 10월부터 김진홍을 국가원수 및 국민 경호를 위해 안전관리대상자에 편입시켜 사찰 관리했다. ◦ 가족들은 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어 병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검 없이 공원묘지에 매장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진정 제79호 박동학 사건

인적 사항	◦ 1973년 3월 21일생, 대구공업대학 학생
사건 개요	◦ 1996년 5월 6일 16:20경 학생과 사무실에서 학생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며 학생과장 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화사고가 일어나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8일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박동학의 부모는 학생과장 김○○을 살인, 학장 노○○을 살인 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달서경찰서는 1996년 6월 17일 박동학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였다고 수사를 종결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학은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으며, 대구공업전문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및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학교측에 요구하였다. ◦ 대구공업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은 법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동아리연합회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 학생과장 김○○이 박동학을 흥분시켰으며, 학생과장과 실랑이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동학의 몸에 불이 붙기까지 학생과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학생과 사무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 목격자와 학생과장의 과실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사고 현장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와 현장실지조사 실시결과 학생과장 김○○의 과실치사 혐의점을 발견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동학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학칙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이러한 비민주적인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법정 기준에 충족하는 교육여건을 구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 내용에 학원의 민주성 정도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 운영과정에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 제80호 최봉대 사건

인적 사항	◦ 1950년 3월 22일생, 노동자(운전자)
사건 개요	◦ 1982년 2월 8일 경기도 평택군 소재 주소지에서 통닭을 사러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동생 최봉일은 같은 달 10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원 소재 신경외과 병원으로 찾아가 의사로부터 2월 9일 16:00경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과거 수사결과	◦ 평택경찰서는 수원지검 송○○검사의 지휘를 받아 최봉대의 주변인물과 현장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수사하였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변사체의 부검 결과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사인이라고 감정하였다. ◦ 경찰은 최봉대가 외부적인 물리적 행사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빙판도로에 넘어지면서 노면의 돌출된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타살혐의점 없어 1982년 4월 8일 수사 종결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최봉대의 처 등 가족과 마을주민들의 진술 및 1993년 경기도 경찰청에서 한 처의 진술 등을 볼 때 최봉대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건 당일 송○○이 최봉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서정파출소에 신고하였고, 파출소 방범대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파출소로 후송해 왔다. ◦ 그 후 송탄시청 직원 천○○와 김○○이 파출소로 와서 파출소 직원과 함께 최봉대를 '유외과'로 후송하고 행려병자로 처리하였으며, 경찰이 돌아간 후 천○○와 김○○은 유외과 원장의 권유에 따라 최봉대를 '수원신경외과'로 옮겨 뇌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
향후 과제	

□ 직권 제81호 박영두 사건

인적 사항	◦ 1955년 7월 28일생, 감호자(청송보호감호소)
사건 개요	◦ 삼청교육대에서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된 군 감호자로 특수사동인 7동에 수감중 1984년 10월 14일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1984년 10월 12일 11:30경 박영두가 고의로 의무과에 보내달라고 소란을 피워 제지했으나 응하지 않아 조사실로 연행하였다. 박영두는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저항하여 1시간 가량 진정시켜 17:30경 감방에 되돌려 보냈다. 다음날 기상 때 위급한 상태에 있어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최○○ 검사와 교도소 당국은 부검을 거쳐 심장마비사로 판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 박영두는 1980년 8월 계엄군에게 연행, 삼청교육과 근로봉사를 마치고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았다. 1981년 10월 1일 발생한 삼청교육대생 집단저항사건에 관련되어 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1983년 3월 22일 청송 제1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다. ◦ 박영두는 1983년 11월 중순경 교도관의 폭행근절과 재소자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고, 12월 7일 7사동으로 전방되었고, 열악한 인권실태를 외부에 알릴 계기를 마련하려고 1984년 10월 12일 10:30경부터 의무과 연출을 계속 요구하다가 15:00경 관구주임 이○○과 교사 박○○ 등에게 8동 지하실로 끌려갔다. 이○○, 박○○, 교도 김○○ 등 7~8명은 비너꽃기, 통닭구이 상태로 묶어 교정봉, 포승, 피대, 워커발로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였고, 고통을 호소하는 박영두를 방치하여 다음날 05:30경 사망하게 하였다. ◦ 동료 재소자 안○○이 큰소리로 항의하자 8동 지하실로 끌려가 같은 방법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 사망 당일인 12일 교도소 측은 교도소장 김○○ 주재로 대책 회의를 하였다. 검사 최○○은 다음날 08:35~09:40 사이에 의과 의사 김○○에게 부검을 의뢰하였다. 13일 검사 최○○은 타살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박영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의 심의를 요청). ◦ 집단폭행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교도관들의 행위는 독직폭행죄가 성립하나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 동행명령 거부자 김○○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다. ◦ 정보를 제공한 안○○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향후 과제	◦ 밧줄, 수갑, 방성구 등을 사용하여 재소자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 직권 제82호 탁은주 사건

인적 사항	◦ 1972년 4월 20일생, 학생(창원대학교 교육학과 2년)
사건 개요	◦ 1990년 3월 대학에 입학하였고, 1991년 12월 10일경 학교에서 진행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 등 관련 행사에 참가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과거 수사결과	◦ 행방불명(우리 위원회에서 사체를 발견한 이후 부산 북부경찰서는 2001년 11월 1일 익사 자살사건으로 추정하여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12월 10일 이후 발견된 신원불명 여자 변사체의 경찰 수사기록을 대조하던 중, 1992년 1월 21일 15:00경 서낙동강변 해포부락 부근에서 발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1992년 3월 3일 익사로 내사종결한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탁은주의 것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2001년 8월 27일 부산 북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하여 탁은주임을 확인하였다 ◦ 탁은주는 1990년 교육학과 학회인 '참교육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91년 2학기에는 회장이 되었다. 전대협 출범식, 총학생회 발대식, 전교조 지지행사 등에 참여하였으나,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안전기획부, 검찰, 경찰 등에 검거되거나 수배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 탁은주는 1991년 12월 10일 07:00~08:00경 등교하였고, 18:00경 창원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과 동기 박○○를 만난 이후로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 탁은주는 실종 후 '참교육연구회' 앞으로 2통의 편지를 보냈다. 후배로부터 입수한 부산 강동우체국 소인의 편지에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싫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편지에는 '부탁, 당부를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진상규명 불능
향후 과제	◦ 변사자의 부패정도가 심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불량지문을 채취하고 머리카락 등을 남겨 추후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 직권 제83호 이재문 사건

인적 사항	◦ 1934년 7월 9일생, 재소자(서대문구치소), 기자
사건 개요	◦ 1979년 10월 4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1980년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서대문구치소에서 형집행 대기 중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변사사건 수사는 없었으며,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진○○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이재문은 1981년 11월 22일 06:50경 위유문부협착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문은 1974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교육책으로 지명수배된 후, 5년 5개월간 수배생활을 하다가 1979년 10월 4일 치안본부에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1979년 12월 7일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었다. ◦ 1981년 8월경부터 위장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족의 요구로 같은 해 10월 27일경 경찰병원에 이송되어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며 3개월 간의 입원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치소는 이재문을 위유문부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기각(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은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민전의 민주화운동 판단과 이재문의 치료제한에 중앙정보부의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정원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협조를 얻지 못했다. ◦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남민전 관련자들에 관한 관련자료의 확보와 분석, 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조사력의 한계로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 이재문이 사형집행 대기 재소자라 하더라도 국가는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교도관집무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구치소에서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한데, 이를 실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구치소 및 교도소 재소자에 대하여도 인권적 차원의 의료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직권 제84호 장석구 사건

인적 사항	◦ 1927년 9월 19일생, 재소자(서울구치소), 남북공예사 사장
사건 개요	◦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중인 이○○를 자신의 공장에 숨겨준 혐의로 1974년 6월 15일 검거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별다른 수사 없이 병사로 처리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석구는 1961년 민족일보 기자, 1964년 대일굴욕외교반대운동 전국공동투쟁위원회 중앙본부 간부로 활동했고,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에 가담했으며, 1970년 무렵부터 남북공예사 사장을 하면서 장준하의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하였다. ◦ 장석구는 '인혁당' 사건을 조사했던 중앙정보부 6국 조사팀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수사 중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자행하여 피의자들이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물론 공판조서까지 허위로 작성되었다. ◦ 장석구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인혁당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문을 받았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 장석구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정도였으나 수감된 후 중증 고혈압 환자가 되어서 1975년 1월부터 5월까지 병사에 입원하였다. 1975년 10월 14일에 다시 병사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구치소에 뇌출혈 환자를 치료할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후 7시간이나 지나 10월 15일 10:30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1:00 무렵에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 인정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석구사건의 발생원인 이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철저히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 영구보존기록인 장석구의 병력표, 건강진단부 등이 멸실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직권 제85호 전정배 사건

인적 사항	◦ 1952년 4월 20일생, 삼청교육대 감호생
사건 개요	◦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전정배는 삼청교육 대상자로 연행되어 B급 처분을 받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은 후, 사회보호법에 의거 감호처분을 받아 육군 ○○사단에 수용 중, 1981년 6월 20일 발생한 감호생 '집단난동사건' 과정에서 경계병들의 발포로 총상을 입고 병원 후송 중 사망하였다.
과거 수사결과	◦ 육군 ○○사단 헌병대와 검찰부는 지휘관에 의한 감호생 구타로 촉발된 감호생 '집단난동' 저지과정에서 경계병의 발포로 1명 사망, 5명 중경상을 입었으며, 감호대대장 불구속 입건, 부대대장과 중대장 2명 구속 입건 후 기소유예, 감호생 14명을 초병폭행, 초소침범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 1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2명은 공소기각,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하고, 경계병의 발포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위원회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7월 30일 각 경찰서에 불량배 일제소탕령을 내려 1981년 1월 25일까지 60,755명을 검거, 이중 40,347명을 군에 인계하였다. 검거자들은 A급 구속송치, B급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 순화교육, D급 훈방조치 등으로 지역정화위원회에서 분류하였다. 법무부는 1980년 12월 18일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거 삼청교육대 교육생 10,228명을 심사하여 7,578명에게 보호감호처분을 결정하였다. ◦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사단 감호분소에 수용되던 중, 군 지휘관들의 폭행을 계기로 감호생들은 정식재판을 받게 해줄 것 등 13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별인 시위대에 대해 군은 엠16소총과 엠60기관총을 발사하여 과잉진압, 6명에게 총상을 입혀 그 중 전정배가 사망하였다.
결정 및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전정배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 ◦ 국가는 삼청교육대 실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향후 과제	◦ 정부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보상을 약속하고 3226명을 접수받았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물질적 보상과 부상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III.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1. 조사 활동

- 가. 활동 성과
- 나. 한계

2. 위원회 운영

- 가. 위원의 참여와 주도에 의한 진상규명
- 나. 공개적인 위원회 운영
- 다. 피해자의 관점과 요구의 존중
- 라. 과거청산을 지향한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조직운영

1. 조사 활동

가. 활동 성과

위원회는 불충분한 법적 권한, 한정된 조사기간, 부족한 조사 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사건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사건 83건 가운데 제기된 모든 의혹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의문사규명위원회가 특별법 상 '의문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모두 52건이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9건을 인정하고 33건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1건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사건조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30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기존의 수사결론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기존의 결론을 부정하는 단서는 밝혀졌으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의문사 사건 이외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치가 요구되는 수많은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점 역시 위원회의 조사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오랜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은 의혹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오던 유족과 친지들의 정당한 의혹해소 요구를 국가가 수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국가기관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을 재조사함으로써, 지배하고 군림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봉사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하나의 선언적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의 조사활동으로 자칫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사인이 왜곡되어 역사속에 묻혔을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어 의문사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억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 사회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망 당시 변사사건 처리나 수사, 이후의 진정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유족의 의혹에 성의 있게 답했더라면, 다수의 사건이 의문사로 남아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며, 나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이 규명되었다. 이에 과거 국가기관의 제도와 관행상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국민의 생명권 침해라는 가장 극단적인 인권침해인 의문사 발생의 원인과 구조의 일단을 밝혀냄으로써, 권위주의통치 하에서 일상화된 국민기본권의 침해와 권력의 불법적 남용,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의 실상을 드러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통치의 폐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과거의 부정적 잔재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성숙한 민주인권국가로의 발전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한 계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이 과거의 부정적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역사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인권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이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러 행정부처의 인력 및 자료, 시설, 각종 편의 제공이 중요 관건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진정기관의 의문사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은 진상규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

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사건관련 자료협조의 지연 및 자료접근의 거부 등으로 일부 정보, 수사기관이 보인 비협조는 진상규명의 성과를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의문사특별법의 제정당시부터 제기된 쟁점이며, 위원회 출범 이후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약한 조사권한과 짧은 조사기간은 진상규명의 성과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의문사사건은 권위주의통치하에 국가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거나, 그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였을 것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의문사사건의 특성상 관련 참고인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서는 진실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오래되어 현장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증거와 기록의 멸실, 중요 참고인의 사망 또는 기억의 퇴색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 일어난 범죄혐의를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직·간접적 증거수집에 불가피한 강제권한과 충분한 조사기간의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 재확인되었다.

위원회가 과거의 국가기관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한시조직이며, 그 구성이 유례를 찾기 힘든 민·관합동 조직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검증된 조사체제와 방법, 고유한 조직문화가 부재한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조직내부의 불신과 갈등 역시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원회가 설정한 포괄적인 방침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조사관 상호간의 조사방향과 범위, 조사초점에 대한 이견, 과거 수사결과 및 기록에 대한 판단과 조사방법상의 의견차이가 한정된 조사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난관을 조성하였다.

위원회는 가능한 쟁점을 명확히 하여 민주적 토론과 지휘부의 조정 및 통제를 배합하여 이를 극복해 나아갔으나, 위원회의 신속 명료한 방침의 수립 및 시달이 지연되거나, 합리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쟁점을 흐리고 상호 불신하는 경향이 조사효율을 제약하고 조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22회의 정기회의와 68회의 수시회의 등 총 90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들은 또한 3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진상규명과 관련된 제반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고 토론하였다. 위원의 논의결과와 결정사항들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하였다.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회가 역점을 두어 해결하려고 했던 사항과 중요 쟁점들은 아래와 같다.

가. 위원의 참여와 주도에 의한 진상규명

의문사특별법 제 4조와 시행령 제 2조는 조사의 주체를 합의제 회의체인 '위원회'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진상규명의 궁극적

책임이 위원회라는 집단의사결정에 있음을 명시한 규정임과 동시에 법 제22조에서 관계자의 진술청취, 감정의뢰,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등과 같은 사실행위 역시 위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모든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의 주도하에 진상 규명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상임, 비상임위원의 구분없이 조사진행과정을 최대한 공유하기 위해, 가능한 일상적인 조사진행상황과 내용의 보고접수, 조사기록의 복제와 비상임위원들의 사전 열람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들은 전문성에 기초해서 감정소위원회, 법개정소위원회, 보고서작성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조사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 현장에 가고,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자료수집을 위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무사를 방문하는 등 총 10회의 실지조사를 벌였다.

나. 공개적인 위원회 운영

국가기관의 운영에 있어 가능한 제반 사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국가가 지향하는 일반적 목표이자 원칙이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 작업은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상규명 작업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당사자들에게 잘 납득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조사활동의 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았다.

그러나 조사활동이 갖는 독특한 특성상 조사기밀의 유지와 밀행성, 관계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차단 등의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필요성을 절충하여 합리적인 조사관행과 방법을 수립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고, 내외적으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원회 논의사항과 결정내용의 신속한 홈페이지 게재, 진정인에 대한 사건조사 설명회 개최, 유족·시민단체 대표와의 정례협의회,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의 공개성을 제고하고, 진정인 및 유족·사회단체로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피해자의 관점과 요구의 존중

위원회는 형식상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이지만 특별법은 제9조에서 외부의 어떠한 제지나 간섭도 받지 않도록 직무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았다. 또한 위원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진상규명 과정 중에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사건발생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 자살이나 사고사로 공식적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되 의문사 사건의 성격과 발생 배경, 국기기관과 국민 개인간에 존재했던 명백한 힘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 구성, 자문위원 구성, 감정소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나타나듯 위원회 운영과 조사과정에서 유족 및 시민단체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라. 과거청산을 지향한 민·관 합동기구로서의 조직운영

위원회는 과거청산과 관련되어 권위주의통치가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수행하는 한시기구이자, 처음 시도된 민·관 합동기구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조직운영 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위원회 출범의 지연과 한정된 활동기간은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창립과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기한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수사관들과 민간단체의 추천으로 채용된 조사관 등 복합적인 구성으로 말미암아 조직운영 면에서 일치와 효율을 기하기 위해 요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드러났다. 민·관 합동 조사기구의 구성은 의문사 진상규명이 갖는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서로 경험과 인식을 달리하는 집단이 함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때문에 조직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의문사규명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틀이 일정

하게 형성됨에 따라 중단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 민·관 합동기구로서 위원회가 행했던 실험들은 이후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가기구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참조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위원회의 활동 경험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인권사회의 토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거청산과 이를 위한 국가기구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문제점, 제반 시행착오 등 모든 것이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의 과거청산 노력에 참조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구들이 보다 진전된 성과를 기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IV. 권 고

IV. 권 고

1. 서 론

2. 사회정의의 실현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 가. 계속적인 진상규명
- 나. 정의의 실현
- 다.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3. 유족 피해에 대한 보상

- 가. 피해 유형
- 나. 피해보상 방안

4.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제도 개선

- 가. 수사제도의 개선
- 나. 사인확인제도의 개선
- 다. 행형제도의 개선
- 라. 군대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마. 기타 제도 개선 권고 사항
- 바.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국가의 조치

5.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사건에 대한 국가의 조치

6. 결 론

1. 서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조사 종결 후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그 내용에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 또한 동 시행령은 “피해자의 피해상황”,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²⁾ 본 권고안은 이와 같은 특별법과 시행령에 입각해서 대통령에게 권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의문사 사건을 단순한 사망사건의 재조사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제도의 개선책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발견된 국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권고를 각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때마다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권고안 작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 넓게 수렴하고, 나름대로의 조사와 연구도 수행하였다. 본 권고안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최종적으로 결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 전체에서 결론 격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항

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3항

의문사특별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설립취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권위주의 통치기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

첫째,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진상 규명은 과거청산의 첫걸음이다. 진실이 규명되어야만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불행한 과거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인권유린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진실규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둘째,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권위주의 통치기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화해를 위해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벌이 전제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용서가 가능하다. 불처벌(impunity)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진상에 대한 은폐이며, 정의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다. 불처벌은 화해와 공동체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상하고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넷째, 명예회복 조치와 기념사업이다. 국가와 국민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할 의무가 있다. 전사회적인 차원의 기억과 추모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의문사 희생자를 비롯한 독재정권기 인권침해 희생자들은 '간첩', '불순세력' 등 여러 가지 누명과 '자살자'라는 불명예에 시달려왔고, 그 유족들도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왔다.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의 불행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화합과 불행한 과거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인식을 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통해 발견한 사실과 문제점을 토대로 국가가 취해야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대통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관련 각 국가기관의 성의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사회정의의 실현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가. 계속적인 진상규명

위원회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개입'으로 야기된 의문사만을 다루도록 법령에서 위임받았다. 지난날 오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행해진 수많은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감안할 때, 이러한 조사활동 범위의 제한은 위원회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성과 또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우선 첫째로, 진상규명이 사건들의 개별적이고 미세한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러나 매 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강제징집이나 녹화사업을 실시한 정치적 배경과 의도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없이는 특히 80년대 군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의문사 진상을 올바르게 밝힐 수 없다. 무고한 시민들을 폭력배라는 낙인을 찍어 하루아침에 강제수용소로 내몰아 사망케 한 삼청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50여명 사망자들의 법률적인 처분이 크게 달라진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회에 부여된 기한과 권한,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 되어 있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이런 조사를 만족스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

둘째로, 위원회가 다룬 의문사 사건은 그동안의 불미스런 국가폭력과 인권유린행위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의 청산과정에서 설립된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 활동들은, 우리처럼 조사 범위를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를 주도한 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활동이 과거 인권유린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지금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얻어낸 의미 있는 결론은 위원회 활동의 종결이 진상규명활동의 종결이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통치가 행해지던 시기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수립 후부터 행해진 모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실상과, 또 이를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1 : 정부와 국회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통해 정부수립 이래 자행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1 이 기구는 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드러난 문제들과 제기된 과제들을 충실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기구는 의문사 등의 사망사건 뿐만이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납치, 실종, 정치적 테러, 협박, 차별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

1-2 이 기구는 기존의 국가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제받거나 제약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자료접근 및 수집, 관련자의 소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권한을 지녀야 한다.

1-3. 이 기구는 전사회적인 공감과 합의 위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또

진상규명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간행함으로써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정리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1-4. 그동안 위원회가 조사한 85개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본 위원회의 부족한 권한, 관련기관의 비협조, 촉박한 조사기간 때문에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이 새로운 기구가 추가로 조사하도록 한다.

권고 2 : 국정원, 기무사령부, 경찰청, 검찰청 등 국가 공안기관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 과거 인권침해에 관한 문서와 기타 민주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정부기록보존소에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문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2-1.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경험에 비추어 과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와 열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상규명 작업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정보기관의 문서라 할지라도 권위주의 통치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관련된 것이라면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2-2. 공안기관의 문서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관료, 정부기록보존소 요원, 학자, 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전문가 위원들이 맡도록 한다.

2-3 관련 문서 조사와 수집작업은 인권침해 진상규명 특별 기구의 중요한 업무 사항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위원회 설립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